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46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윤건영・모경종・박지원

이기헌 • 신정훈 • 김영배

한병도 • 노종면 • 김영진

문진석 · 강훈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 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 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訴)의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		
지급금의 지급) ① ~ ③ (생	지급금의 지급)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		
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		
	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		
	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